

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
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
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6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미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「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」(이하 “해당 조례” 라 한다) 폐지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안배경

- 2023년 11월, 김국기 의원(대표발의)은 과학인재국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조례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실제 없는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¹⁾
- 해당 조례는 2015년 5월 제정 이후 ‘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’의 미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안됨

1) 행정사무감사 시 과학인재국장은 해당 조례가 과학인재국 소관 조례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으며, 대신 과학기술정책과장이 해당 조례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과학인재국 소관 조례이며, 유명무실한 조례의 경우 검토 후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답변함

나.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은 미래과제의 발굴·선정·조사·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 실적은 아래와 같음

구분	운영 실적
2015년 1월	해당 조례 제정 이전 ‘미래전략기획단’ 을 신설, ²⁾ ‘지역전략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’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
2015년 4월	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출범 및 1차 회의 ※ 산·학·연·관 기획전문가 28명(임기 2년)
2015년 5월	해당 조례 제정 ※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, 미래전략기획단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
2015년 7월	2차 회의
2015년 11월	3차 회의
2016년 5월	4차 회의, 미래전략기획단 폐지 및 관련 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 ³⁾ ※ 이후 별다른 운영 실적이 없음
2017년 4월	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단원 임기 종료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가 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·신설됨 ⁴⁾
2020년 1월	※ 이에 따라 ‘미래신산업정책’ 관련 업무와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운영을 과학인재국에서 담당하게 됨

2)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(시행 2015. 1. 1.) 제6조의3(미래전략기획단)

- ①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<신설 2015. 1. 1>
- ②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무부지사를 보좌한다.<신설 2015. 1. 1>
 1. 지역전략산업 종합계획 수립·육성 및 지원<신설 2015. 1. 1>
 2. 전략산업 세부사업 총괄 및 신규과제 발굴·추진<신설 2015. 1. 1>
 3. 산업, 경제, 지역개발 분야 중앙부처 융복합 협업업무 추진<신설 2015. 1. 1>
 4. 중앙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, 유관기관의 정책연구 변화 트렌드 분석 대응<신설 2015. 1. 1>
 5. 4%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총괄 및 신규과제 발굴·추진<신설 2015. 1. 1>

3)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(시행 2016. 5. 24.) 제9조(경제통상국) 제19호를 신설함
19.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
4)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(시행 2020. 1. 1.) 제9조의2(신성장산업국) 신성장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미래신산업정책의 발굴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2.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(이하 생략)

- 해당 조례는 주무 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2016년 5월 폐지된 후 6~7년 이상 유명무실하게 존치되고 있는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로 현재는 실효성이 없어 정비가 불가피함
- 또한, 해당 조례 담당 부서인 과학인재국에서도 ‘원안동의’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해당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 및 타당성) 이 폐지조례안은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실체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 정비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
-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